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42
----------	-------

발의연월일 : 2025. 7. 25.

발 의 자 : 서삼석·박용갑·신정훈
윤준병·김교홍·박수현
이원택·강득구·이병진
문대림·서영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임업인을 대상으로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이 전체 임가 인구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업인에 대한 소득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며, 산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임업 종사자 수의 감소로 임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을 매매·임대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경영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지급하여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등, 농지은행사업과 유

사한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산촌의 진흥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제명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 나. 산지의 매매·임대차·수탁 등 산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함(안 제24조 신설).
- 다.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임대차사업 등 산지은행사업별 내용 및 추진절차 등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 라.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 자금의 차입, 기금의 용도 및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4조부터 제45조까지).
- 마. 기타 산지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53조제2항 신설).
- 바.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및 산지은행관리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3호) 및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영과 산지은행사업”으로 한다.

제23조 다음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30조 다음의 “제6장 벌칙”을 삭제한다.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로 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산지은행사업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산림경영의 규모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선, 산지

(山地)시장의 활성화와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산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산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사업

나. 산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사업

라. 산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업

마.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들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
정하는 업무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
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리원이 아닌 자는 산지은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관리원의 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
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산지매매사업 등) ① 관리원은 전업임업인을 육성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등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전업임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임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관리원은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에게 산지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관리원은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의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이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임차산지를 전업임업인,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또는 임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의 영림업 복귀 지원) ① 제26조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림업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원은 해당 산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원은 산지를 매도하고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림업 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① 관리원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

인 또는 임업법인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하 “산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산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산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등을 관리원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산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그 산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원은 그 산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사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관리원은 임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산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험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관리원은 산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산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산지연금만이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급권의 보호)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지연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산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 등)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

년마다 산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관리원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2. 제26조에 따른 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
3. 제28조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
4. 제29조에 따른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산지 정보관리체계의 정비 등) 관리원은 산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6장(제34조부터 제4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제34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정부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입금
3. 제36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자금의 차입) 산림청장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산지은행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임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제38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산림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제43조(기금 계정의 설치) 산림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 기금의 지출은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제4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45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52조(종전의 제30조)제2호 중 “제27조제1항”을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벌칙

제53조(종전의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 중 “제25조제2항을”을 “제47조제2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받은 사람은 지원 금액 또는 받은 임대료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종전의 제32조) 본문 중 “제31조의”를 “제53조의”로 한다.

제55조(종전의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②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지은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산지은행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산지은행관리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산지은행관리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⑥ 설립위원회는 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및 운영 준비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채용된 자는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가 완료된 때에 산지은행관리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임업·산림 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등 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 제도의 구성 및 <u>운영</u>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u>제5장 보칙</u> <u>제6장 벌칙</u> <u><신 설></u> <u><신 설></u>	<u>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및 산지은행 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 ----- ----- -----<u>운영과 산지은행사업</u> ----- -----. <u><삭 제></u> <u><삭 제></u> <u>제5장 산지은행사업</u> 제24조(산지은행관리원의 설립 등) ①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지은행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1. <u>산림경영의 규모화, 산지의 효율적 이용, 임업의 구조개 선, 산지(山地)시장의 활성화 와 임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u>

“산지은행사업”이라 한다)

가. 산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사업

나. 산지의 가격, 거래동향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다.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
지 매입사업

라. 산지의 임대 등의 수탁사
업

마.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
등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
업

2. 제49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
장이 위탁하는 업무

3.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림청
장이 인정하는 업무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
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
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관리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신 설>

정한다.

⑤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관리원이 아닌 자는 산지은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⑦ 관리원의 장은 관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산지매매사업 등) ① 관리원은 전업임업인을 육성하고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업인이 아니거나 직업 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임업인 등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당 산지를 매입하여 전업 임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임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에게 해당 산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

<신 설>

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이 해당 산지를 매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관리원은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에게 산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및 임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산지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산지의 장기임대차사업)

① 관리원은 직업을 전환하거나 은퇴하려는 임업인의 산지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임차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이 제1항에 따라 산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 중의 임차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른 임

<신 설>

차산지를 전업임업인, 전업임업인 육성 대상자 또는 임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④ 관리원은 장기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대상자의 선정과 임대차의 요율(料率), 그 밖에 임대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의 영림업 복귀 지원) ① 제26조에 따라 산지를 임대하고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전환 후 2년 이내에 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반환하고 영림업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관리원은 해당 산지가 제3자에게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원은 산지를 매도하고

<신 설>

직업을 전환한 임업인이 직업 전환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비용을 지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림업 복귀 희망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 매입 등) ① 관리원은 자연재해, 병충해, 부채의 증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이 소유한 산지 및 산지에 딸린 임업용시설(이하 “산지등”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그 임업인 또는 임업법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②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산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그 산지등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지등을 관

<신 설>

리원에 매도하고 다시 임차한 그 산지등의 전 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임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그 산지등의 환매(還買)를 요구할 수 있고, 관리원은 그 산지등이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수용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지등의 매입가격·환매가격 및 지급방법, 임대기간·임대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① 관리원은 임업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임업인이 소유한 산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이하 “산지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방법, 지원대상자의 권리보호, 산지의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및 자금의 회수방법, 가입비와 위

<신 설>

<신 설>

협부담금의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 ①

관리원은 산지연금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산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지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산지연금만이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급권의 보호) ① 제29조

<신 설>

제1항에 따른 산지연금을 지원 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2조(산지매매사업자금의 용자

등) ① 산림청장은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산지의 장기 임대차사업,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드는 자금을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서 용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의 자금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산지가격 변동분을 고려하여 자금지원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대하

여는 관리원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각 호의 사업별로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산지매매사업

2. 제26조에 따른 산지의 장기 임대차사업

3. 제28조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산지매입사업

4. 제29조에 따른 산지를 담보로 한 임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④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아 제25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제34조에 따른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에 귀속되며, 이익금의 납입과 손실금의 보전(補填)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3조(산지 정보관리체계의 정비 등) 관리원은 산지의 가격 및 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u>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야 한다.</u> <u>제6장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기금</u> <u>제34조(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 정부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접 지불제도 및 산지은행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u> <u>제3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u>1. 정부의 출연금</u> <u>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입금</u> <u>3. 제36조에 따른 차입금</u> <u>4. 기금의 운용수익금</u> <u>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u>
--	---

<신 설>

<신 설>

은 전입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6.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및 과
태료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입금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
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36조(자금의 차입) 산림청장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국가재정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특별
회계,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
다.

제37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2. 산지은행사업의 추진을 위하
여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임업·산림의 공익
기능 증진 및 임업인들의 소
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 설>

<신 설>

<신 설>

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사
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제38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
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
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매년 「국가재
정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
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을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
금은 산림청장이 관리·운용한
다.

② 산림청장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산
림청장이 지정하는 임업 관련

<신 설>

<신 설>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산립 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산립청장은 제4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

<u><신 설></u>	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u><신 설></u>	제43조(기금 계정의 설치) 산림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 기금의 수입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u><신 설></u>	② 기금의 지출은 제37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부수되는 경비로 한다.
<u><신 설></u>	제45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u><신 설></u>	①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u><신 설></u>	② 기금의 결산 결과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u>제24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생략)</u>	제7장 보칙 <u>제4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현행 제24조와 같음)</u>

제25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생략)	제47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현행 제 25조와 같음)
제26조(지도 등의 의무) (생략)	제48조(지도 등의 의무) (현행 제 26조와 같음)
제2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생 략)	제4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현 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 (생략)	제50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 시원)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포상금의 지급 등) (생 략)	제51조(포상금의 지급 등) (현행 제29조와 같음)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 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 무원으로 본다. 1. (생략) 2.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라 산림청장의 권한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u><신 설></u>	제5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9조제1항----- ----- ----- <u>제8장 벌칙</u>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제53조(벌칙)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
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
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한 자

<신 설>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
여 제3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
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
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
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 제47조제2항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항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거
나 제26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를 받은 사람은 지원 금액 또
는 받은 임대료의 100분의 20
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제54조(양벌규정) -----

-- 제53조의-----

그러하지 아니하다. <u>제33조(과태료) ① (생 략)</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 <u>제5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u> <u>②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산 지은행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③ 제1항 및 제2항</u>----- ----- ----- -----.
---	--